

수원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가단560459 판결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이원우, 문다미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호, 오지혜

변 론 종 결 2021. 1. 26.

판 결 선 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유리창 세척장치에 관한 발명특허를 보유한 업체이다.

나. 원고의 남편 C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소개를 받아 2018. 11. 24. 피고와 피고회사의 발명특허 장치를 사용하는 청소용역 서비스를 피고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D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당사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사업 적용 범위)

본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발명특허기계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특정지역의 지사 사업자로서 영업 및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원고는 아래 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이하 생략)

2. E를 포함한 본사에서 영업한 모든 용역은 위에서 언급한 독점권에서 제외되며 위 용역은 피고가 각 지사로 해당 용역을 배분한다.

제4조 (지원정책)

피고는 원고와 맺은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 원고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1. 사업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특허기계 1 set, 카탈로그 및 피고의 브로셔 등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한다(계약이후 카탈로그 등 필요물품은 공동제작하여 분배 분담한다).

2. 사업발전을 위한 마케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3.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홈페이지 등) 및 지역의 제2조의 1항과 같은 독점권을 부여한다.4.

원고에게 부여한 특허기계 A/S 발생시 조속히 처리해준다.

제5조 (피고의 역할과 의무)

1. 피고는 원고의 마케팅 활동에 의해 고객발생시 신속, 정화하게 견적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2.

피고는 원고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업정보 및 시장정보 등을 제공한다.

3. 피고는 원고의 계약기간 이후 지사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 원고의 역할과 의무

1. 원고는 피고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피고가 정하는 정책에 따라 지사 사업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를 제공받는 피고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 영업활동 및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특히 F 등 원고가 영업 및 관리하고 있는 매장의 용역은 원고의 특별한 권한 내의 것이다. 피고는 이 업체들의 용역을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용역 처리함을 인지하고 해당 건에 관한 용역은 제2조의 2항처럼 원고의 분배와 지시를 받는다.

제8조 (사업구역, 보증금 및 지사 사업비)

1. 피고의 사업구역은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지사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거주지 우선으로 선택하고 제2조의 내용과 같은 사업구역을 갖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2조의 사업구역에 대한 독점권과 특허기계 1set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7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영업정책

1. 피고는 계약된 원고의 지사 사업구역 외의 영업 및 용역서비스의 모든 활동을 금한다.

2. 생략

3.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 건에 관해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매출의 20%~30%를 피고에게 영업지원금으로 지불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원고의 계약내용 위반 시 피고의 통보로 지사 사업권을 반납하여야 하고, 다음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서면통지 없이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1. 을이 갑의 서비스나 아이템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과장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4. 원고가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의 영업권 혹은 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증 또는 금품을 전제로 양도하였을 경우
5. 원고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발생시 대금의 지급약정을 지체하거나 위했을 경우
6. 원고의 특허기계를 모방 혹은 판매하였을 경우 혹은 그에 준하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7. 원고의 과실이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해지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일체의 금액은 없으며 피고에게 받은 특허기계를 꼭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피고의 별도 해지통보나 변경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및 사업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2.부터 위 C과 둘이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 주된 업무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E 영업점 등을 배정받아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라. C은 2019. 5. 피고가 배정한 스케줄 표에 종전에 해오던 E 매장에 대한 청소 배정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2019. 5. 16. 피고를 찾아가 피고회사 대표이사과 청소배정문제와 지사 매출, 수수료 등의 문제로 다투었는데, 이때 피고 대표이사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였고, C은 피고 대표이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마. C은 피고회사를 나와 피고회사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할 의사를 밝히고 2019. 6. 1.부터 다른 직장으로 나가 근무하기 시작했다.

바.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2019. 5. 17. 회사 직원을 통하여 원고와 C에게 'D의 5월 18일부터 담당매장 방문을 금지한다....', 본사에서 지원한 청소기계는 반납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2019. 5. 29.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기존 D가 설립인가 취소처리 되었으므로 신규지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사. 원고 및 C과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2019. 5. 16. 이후 다시 만나지 않았으며, 이후 원고나 C이 피고에게 D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0, 11,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청소용역업무 수행장소인 매장방문을 금지하고 이후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 운영 D의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공고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2020.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위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상 보증금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이행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답변서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며, 원고가 지급한 7,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종료시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이 아니고 지사 사업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5. 말경 이 사건 계약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그 무렵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위 7,000만 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사업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과실이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과 사업비가 각각 얼마인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의 반환여부 및 반환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의 구속력을 유지시키고 이 사건 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의 성격과 피고의 지사 사업자로서 피고의 특허기계, 상호, 노하우 등을 사용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사업비 또는 가맹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위 7,000만 원 중 일부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보건대, 위에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위 7,000만 원이 지급된 경위 및 금전 지급의 성격, 이 사건 계약기간과 계약이 유지된 기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및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0.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우